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14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이헌승·서일준·서범수

박성훈 • 박덕흠 • 정성국

김정재・김 건・윤상현

강명구 · 이양수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.

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, 6·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특히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, 향후 4~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는 6·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,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,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19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"6·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 회원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"을 "제2조제 2호나목·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"으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6·25전쟁참전 유공자 또는 월 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1인이 6·25참전유공 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6·25전쟁 참전유공자"를 각각 "6·25 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8조(대한민국6 · 25참전유공자 제18조(대한민국6 · 25참전유공자 회의 설립) ① 6 · 25전쟁 참전 회의 설립) ① 6 · 25전쟁 참전 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유공자와 그 유족 등 회원 ---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6 · 25참전유공자회(이하 "6 · 25참전유공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제18조의2(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회의 설립) ① 제2조제2호나목 회의 설립)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•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 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회(이하 "월남전참전자회"라 한 다)를 둔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 제19조(회원의 자격) ① (현행 제 른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 · 25참전유공자회 또는

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| 제9조에 따른 대 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 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 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<신 설>

제24조(사업) 6 · 25참전유공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 다.

-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 도모
- 2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 지증진 및 권익신장
- 3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 예선양 및 추모사업
- 4. 5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6 · 25전쟁참전 유공자 또 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사 망한 경우 그 유족 중 1인이 6 • 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제24조(사업) -----

- 1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1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----
  - 2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----
  - 3. 6 · 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----
  - 4. 5. (현행과 같음)